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878
----------	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5년 12월 21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은 서울시의 출연금만으로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, 기본재산 조성 재원에 출연금 뿐 아니라 재산을 추가함.

2. 주요골자

- 서울시의 출연금 및 재산을 재원으로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하도록 함(안 제4조제1항제1호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“출연금”을 “출연금 및 재산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<u>국가·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·자치구의 출연금 및 재산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4조(기본재산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출연금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시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조(기본재산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출연금 및 재산</u></p> <p>2. ~ 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재산

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 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<u>국가·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·자치구의 출연금 및 재산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4조 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출연금 및 재산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시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</u></p>